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38
----------	-------

발의연월일 : 2025. 8. 25.

발 의 자 : 양문석 · 조계원 · 양부남
전용기 · 이광희 · 최혁진
최민희 · 허성무 · 박민규
김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홍보 및 유통이 필수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작 및 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추세임. 이처럼 시의성이 요구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행 등급분류 절차는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음악영상파일을 제작”을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제작”으로,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을 “해당 음악영상물등을”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음악영상물등”으로,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제65조·제66조·제9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97조·제98조제1항제3호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98조제2항제9호”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8·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제66조·제9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97조·제9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를 ““음악영상물등”으로”로 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한 법인

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제1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3. 최근 5년간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음악영상물 등이 공급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에 발생한다.

제17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음악영상물등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급 등을 표시할 것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5.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이행할 것
 6.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7.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제17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7조의6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직권등급재분류)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음악영상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또는 결정 취소 전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를」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분류된 음악영상물등이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분류된 음악영상물등이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분류된 음악영상물등이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한 경우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정이 상이한 경우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상호(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를 “상호(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음반등”을 “음반등 또는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영상파일이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

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 ①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등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제작-----해당 음악영상물등을----- ----- ----- -----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 ---.
②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제65조·	② 음악영상물등----- ----- -----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8·제51조부터 제56조

제66조 · 제9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 제97조 · 제98조제1항제3호의2 · 제4호부터 제6호까지 · 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 · 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

<신 설>

까지 · 제66조 · 제9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 제97조 · 제9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음악영상물등”
으로-----
-----.

제17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올라
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
고를 한 법인

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
리 법인

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17조의5제1항
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
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
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제1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3. 최근 5년간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음악 영상물등이 공급되기 전에 문

<신 설>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에 발생한다.

제17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음악영상물등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급 등을 표시할 것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

<신 설>

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5.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6.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7.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17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등급분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7조의6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

<신 설>

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직권등급재분류)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음악영상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또는 결정 취소 전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분류된 음악영상물
등이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1
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분류된 음악영상물
등이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
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등급분
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1
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분류된 음악영상물
등이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
히 위배한 경우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
급분류 결정이 상이한 경우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

	<u>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를 자체 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u>
	<u>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25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등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u>상호</u> (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표시의무) ① ----- ----- ----- -----상호 (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①·② (생략)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군수·구청장</u> 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
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
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등을 하는 경
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생략)

<신설>

-----음반등 또는 제17
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영상
물등-----

-----.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⑥ (현행과 같음)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영상파일이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신 설>

제36조(과태료) <신 설>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 ①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부과 · 징수한다.	또는 <u>시장 · 군수 · 구청장</u> ----- -----.
------------	---